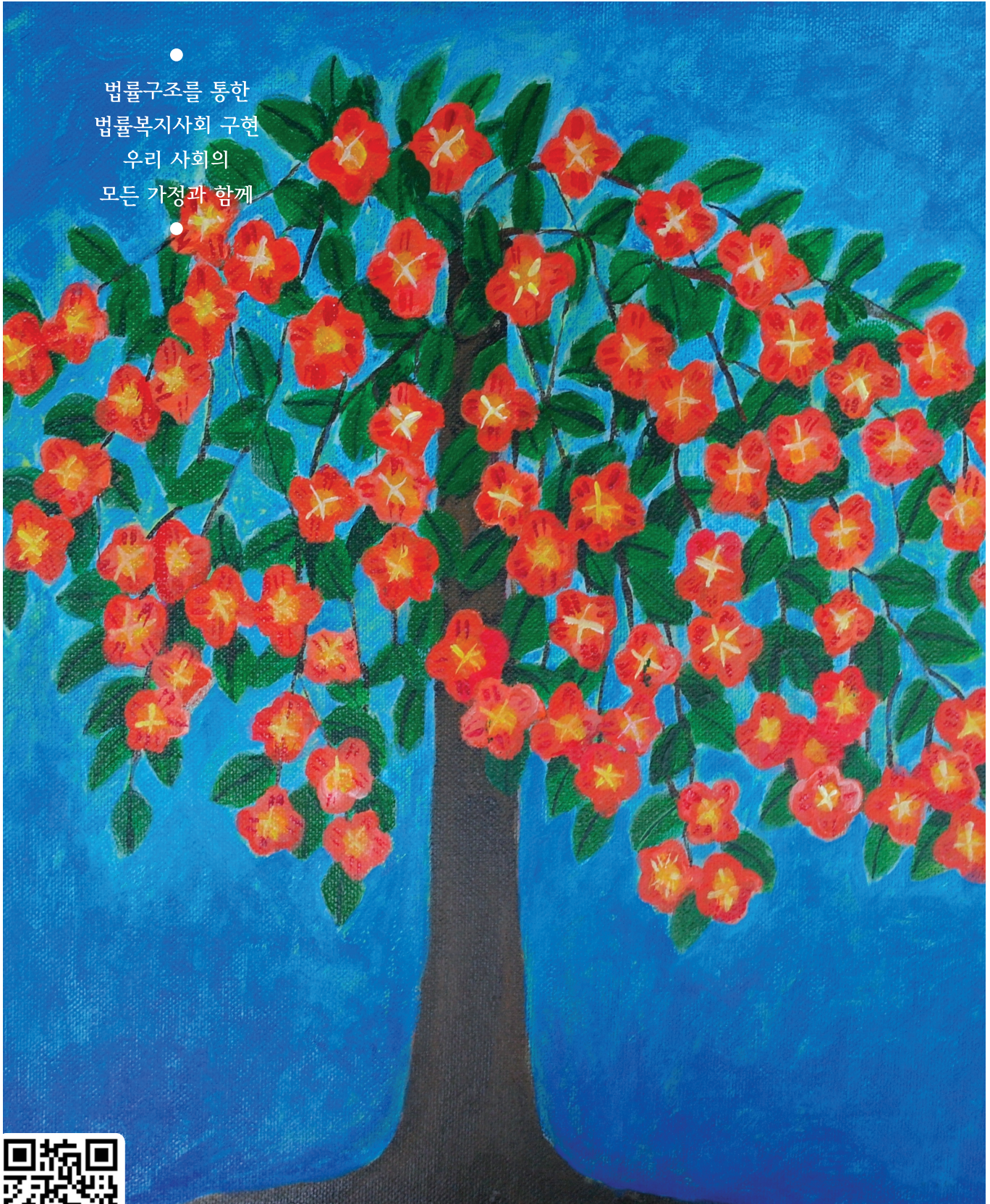


가정상담

2016 5
통권 393호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는 지난 4월 6일 여의도 벚꽃축제를 맞이하여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본소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 공모'에 당선되어 3월 말부터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모서리, 신촌역 승강장 안전문, 강남역 6번 출구 앞과 동교동 제일은행 앞의 가판대에 상담소 홍보물이 부착되었으며 6월말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4 • 이 달의 메시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6 • 특집 I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②

14 • 특집 II | 이태영 선생님 탄신 백주년 추모원고 24

16 • 특집 III |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제3강

20 • 가정폭력상담실

24 • 소송구조

26 • 결혼과 인생(159) 만화일기

위기의 소년들 _ 장차현실

27 • 인터넷 상담

28 • 비혼모 가정을 위한 캠프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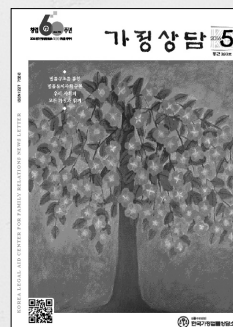
30 • 상담소 소식

32 • 지부소식

33 • 상담통계

34 • 좋은 책

삶의 격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이 달의 메시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황금연휴가 있어서, 해마다 뉴스에서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붐비는 인천공항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 습니다. 올해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 하지만 한 편에서는 역대 최저의 혼인율에 대한 소식이 있고, 한 때 호황을 누리던 조선업계가 위기에 처하면서 도시 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이 매일의 신문지면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혼인을 하지 않고, 구조조정의 한파가 밀어닥치면서 경제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가정문제를 최일선에 서 다루고 있는 상담소로서는 그 이면의 상황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가정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 왔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정도나 상황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요즘의 젊은 세대는 역사상 최초로 부모보다 못사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최저의 혼인율입니다. 혼자 살아 내기에도 버거운 삶이니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

현실이 최저의 혼인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나 비정규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경제적 위기 상황은 부부간 갈등과 마찰의 요인이 되거나 심지어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노인세대의 부양문제를 사회 전체의 과제로 대두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건강한 가정이 사회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건전한 지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입니다. 그 뿌리가 근원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니 국가와 정부가 어떠한 거시적인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 4월 상담소에서 다루었던 심포지엄에서 가정폭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담론 그리고 그와 연관하여 이 지면에 담았던 메시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증가양상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가 가정의 위기를 직시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정문제를 다루는 상담소로서 이렇듯 총체적인 가정의 위기 앞에서 상담소의 모든 구성원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단체가 감당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부나 국가가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정의 위기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구형태 등과 관련한 문제라기보다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인간으로 태어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국가 차원에서의 가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지금과 같은 가족위기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비단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가족구성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 뿐 아니라 직간접으로 가족구성원과 관련이 있는 모두 부처에 대해 지금의 가족위기 상황에 대한 해답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국가 사회의 근간으로써 가정이란 무엇인지, 현재 가정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국가와 정부 전체가 가정문제를 모든 과제의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특정부처가 아니라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바로세우기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문제가 국가의 다른 과제들과 별개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모두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삶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과제를 풀어나갈 때에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근원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가정의 달, 5월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절실한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I*②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 (2)

가정보호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권 양 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I. 들어가며

II. 가정보호절차

가정보호사건이 송치된 이후 판사는 직권으로 행위자에게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피해자 또

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5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 5가지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퇴거 또는 접근금지, 통신제한의 임시조치 위반의 경우, 보호처분 위반의 경우와 달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 나아가 유치명령의 경우에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경찰이나 구치소의 협조를 구할 수 없어 보호 장비나 차량의 지원 없이 법원 보안관리대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위자의 자해나 도주, 그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등 돌발 상황에 따른 위험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 임시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내용과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을 심리하여 행위자에 대

* 본소에서는 지난 3월 25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심포지엄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을 실시하였고, <가정상담> 4월호에 본소의 수탁사건 상담통계 발표를 요약 게재한데 이어 이번 호에는 법원, 검찰 등 각 부문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실는다.

하여 불처분 결정을 하거나 보호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보호처분은 1호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호 사회봉사·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6호 가정폭력방지법이 정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호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8호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의 8가지가 있다.

3호 친권행사의 제한은 피해자가 아동이고,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2014. 9. 시행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므로,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친권제한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

4호의 수강명령은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행위자가 수강 명령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역시 이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회봉사에 대하여는 노동의 부과가 가정폭력 행위자를 교화, 개선시키는 제재 방법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생업에 지장을 받음이 없이 주말을 이용하여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처분이라는 장점이 있다.

6호 감호위탁은 행위자를 가정폭력방지법이 정한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행위자를 위한 감호 위탁시설이 없어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없다.

7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처분은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남용의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가정폭력 사례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음주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다 자신의 문제를 축소보고하려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 역시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피

해자에 대하여도 행위자와 함께 상담을 받거나 자조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치료위탁의 경우 행위자가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알코올 남용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가정폭력 행위자는 치료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결정을 함께 하고 있다.

8호 상담위탁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처분이다.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위탁처분을 하면서 가급적 피해자도 함께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행위자의 가정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유발되는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상호작용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가정폭력방지에 실질적 도움을 주거나, 나아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행위자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한편 보호처분 위반의 경우, 1호부터 3호까지의 처분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임시조치 위반의 경우와는 달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어 다소 위하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4호부터 8호 처분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법원에 이송하여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할 수 밖에 없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반발이 예상되며,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대다수 사건이 그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되는 등 처분의 이행을 강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III. 피해자보호명령절차

가정폭력처벌법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외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절차에 따른 처분은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등이 있는데, 실무상 피해자가 이혼소송의 자료로 삼고자 사안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실무상의 문제점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려면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기일에 불출석한 행위자에 대하여 동행영장을 발부하여도 영장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재탐지나 과태료만으로는 행위자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불출석 행위자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 불처분 결정과 함께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절차로는 성행개선이 필요한 행위자에게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가정보호사건의 실효성 있는 처분을 위하여 동행영장의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 가정폭력처벌법과 같은 체계를 따르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는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절차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절차가 별개로 분리되어 있어 법 적용과 집행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법무·검찰의 가정폭력 관련 정책 현황

- 아동학대 중심으로 -

고 경 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I.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1. 아동학대 발생의 심각성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가족해체, 경제위기 등으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아동보호기능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아동학대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실제로 2011년 10,000여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2015년에 19,200건을 넘어섰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도 2015년 11,709건으로 2011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치다. 아동 1천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3명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의 약 9.1명 수준(2013년 기준)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가정폭력의 일환으로서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집계된 11,709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에 해당하는 사건은 9,347건으로 전체 사건의 79.8%에 해당한다. 특히 친부·친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도 전체 사건의 75.5%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3. 아동학대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및 제도

아동학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동의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인

가정에서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가정폭력의 당사자인 부 또는 모가 가정 유지를 위해 아동의 고통을 묵과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피해아동이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는 것도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 후유증은 크고 오래 지속되며, 2차 피해에도 극히 취약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특수성이다.

결국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아동의 발견율을 높이고, 학대행위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II. 아동학대 관련 법제 소개

1.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범죄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¹⁾.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²⁾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범죄’들을 의미한다(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제4호).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제2조(정의)4.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후략)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후략)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후략)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후략)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후략)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후략)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후략)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후략)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후략)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후략)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위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특유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³⁾.

2. 아동학대 사건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2)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현장출동을 통해 피해아동을 발견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응급조치를 해야하며 학대행위자의 격리,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또는 의료시설 인도 등이 포함된다.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건 처분 전까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검사가 청구하

-
- 1) ‘아동학대의 세부유형’에 대하여 글 말미에 첨부 표로 정리함
 -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 3) 아동학대처벌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친권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등이 있다.

(3) 검사의 처분

검사는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한다. 이때 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해 수감·이수명령의 병과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학대행위자의 범행동기, 죄의 경중, 성행,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을 할 수 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판단하여 학대행위자에게 형벌이 아닌 접근 금지, 친권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사회 봉사·수감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종국적으로 내릴 수 있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

한편, 피해아동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피해아동이 직접 청구하거나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청구할 수도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피해아동은 학대행위자로부터 더 장기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호명령의 내용에는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정지 외에도 피해아동의 보호위탁, 가정 위탁, 친권자를 갈음하는 의사 결정 등이 가능하다.

3. 아동학대처벌법의 특징

(1) 신고의무 강화

음지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의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를 강화했다.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의심만 있어도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2) 초기대응 강화

신고접수 시 원칙적으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출동하며,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검사는 응급조치 이후 72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3) 친권 제한 등 청구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비중이 높은 만큼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피해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임시적으로 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4) 성행 교정에 중점을 둔 다양한 처분

검사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기소여부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학대행위자의 교화를 위한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지원

2차 피해에 취약하고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아동을 형사절차에서 조력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4.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동향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시행된 것은 2014년 9월 29일로 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한편,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도 계속 발의되고 있다.

현재 법안개정은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발견을 제고, 아동학대사건의 엄정처벌에 맞춰져 있다.

III. 법무·검찰의 아동학대 대응 정책

1. 범정부 아동학대 대응 강화 대책

정부는 2016년 2월 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등 아동학대 사각지대 중심 조기발견 강화
-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및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 명확화로 아동학대 발생 초기 신속대응 강화
- 분리보호, 상담·교육 및 의료심리지원 등 재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건전성장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아동 및 부모 대상 교육, 대국민 홍보 등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2)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범정부 아동학대대책 추진협의회’를 중앙컨트롤 타워로 구성하였다. 복지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이에 참여하여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이행, 점검하고, 매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컨트롤타워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사례 대응을 총괄·주도하게 할 예정이다.

2. 법무·검찰의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

법무·검찰의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도 ①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②아동학대사건의 신속·엄정대응 ③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④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의 4가지 추진방향으로 마련되었다.

IV.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과제

1.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굴해낼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의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2. 일선 상담소의 업무협조

가정폭력상담소의 장 및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중에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⁵⁾. 또한 인적사항 등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알게 된 사실이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에 대한 관점과 개입방안

이 서 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I.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개입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남성가해자이다. 이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가 남편이라는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이다.

II. 국내외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개입 효과의 선행연구 검토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행위 남편의 폭력을 감소

4)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글 맨 뒤에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에 수록된 ‘아동학대 징후’ 첨부

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Babcock & Steiner, 1999; Gondolf, 1999; Murphy, Musser & Marton, 1998; Shepard, Falk & Elliot, 2002; 김재엽, 2011; 이서원, 2003).

III.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에 대한 관점

1.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시각

: 이것도 폭력인가

지금까지 상담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남성가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나는 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왔다’는 말을 한다. 이때 남성가해자들은 폭력을 흥기를 들고 아내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히거나 최소한 주먹이나 발로 마구 때려 멍이 들 정도로 본다. 그러므로 그 이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자신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항변한다. 가해자들의 의식 속에서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경미한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은 폭력이 아니다. 어느 부부 사이에서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사일 뿐이다. 그래서 보호관찰이나 상담위탁을 받은 것이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게 된다. 어디 제대로 한 번 때리고 여기 왔으면 덜 억울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남성가해자들의 상담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분노, 법원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결국 근본적으로 ‘이것도 폭력인가’라는 의식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경찰과 판사에 대한 시각

: 분하다 당했다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첫 번째 분노대상은 경찰이다. 신고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검찰로 넘기더라는 것이 경찰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다. 신고만 되면 사정이 무엇이건 경찰은 다 넘긴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은 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결 주체인 판사에 대한 분노가 크다. 판사는 폭력 사실 하나만

을 볼 뿐, 우리 부부를 보지 않는다, 나를 보지 않는다, 고로 아내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런데 나만 남자라는 이유로 처벌한다. 이것이 판사에 대한 다수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생각이다.

3.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아내에 대한 시각

: 짝은 여자가 짓고 벌은 남자가

여성 상위 시대에 남편인 자신은 희생자이자 피해자이며, 자신보다 배우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죄는 여자가 짓고 벌은 남자가 받는다’는 말이 남성가해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가장 유명한 말이다. 여기에는 폭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원인을 아내가 제공하고 정작 그 결과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해 엄격하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현실에 대한 강한 분노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은 사회가 남성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경험을 상담에 이르는 과정 동안 하고나면, 어떻게 해야 사법 절차에 연루되지 않고 아내에게 당한 것을 갚아줄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런 고민의 산물이 경제적 제재다. 아내에게 일체 돈을 주지 않는 것이다.

4.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자신에 대한 시각

: 나도 나를 모른다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는 폭력 자체를 선호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저 막연히 결혼하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예비 신랑 신부처럼 어쨌든 살다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사실 그는 그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렇게 자신의 욕구와 선호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욕구와 선호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자신과 아내에 대해 잘 알고 있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부관계는 빼적될 수밖에 없다.

5. 가정폭력 남성가해자의 미래 부부관계에 대한 시각

: 아 몰라

“제가 30년 이상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고민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 마누라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껏 30분도 생각한 적이 없더라고요. 만약 제가 우리 회사 생각하는 백분의 일만, 아니 천분의 일만 우리 아내에 대해 생각했다면 손자 같은 사람이 있는 이 장소에 와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됩니다.” 환갑이 훨씬 넘은 육십 후반의 어느 가정폭력 남성가해자가 10년 전쯤 집단상담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담자는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한 가해남편들도 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는 미래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떻게 아내와 지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흔히 체득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힘든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 말아야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이 각오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부부관계를 평등하고 상호 원하는 것을 충족하도록 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막막한 심정으로 다시 원래 갈등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IV.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개입방안

폭력은 부부관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폭력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폭력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부부관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잘 하는 점은 지속하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특수에서 일반으로 : 폭력남성이 아니라 일반남성이다

2. 행위에서 감정으로

: 폭력은 받아줄 수 없어도 감정은 받아줄 수 있다

3. 특별에서 보편으로

: 폭력문제 해결이 아니라 부부문제 해결이다

4. 현재에서 과거로

: 과거가 모여 현재가 된 것이다

남성가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부관계에 대한 무지와 부부관계기술의 부족이다. 자주 발견하게 되는 원인은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과정에서 비폭력적이고 평화롭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정서적 언어적 폭력은 심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5. 과거에서 미래로

: 불행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성공적으로 상담을 마무리하는 가정폭력 남성가해자들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성공요인은 ‘되짚어보기’와 ‘방향잡기’다. 되짚어본다는 것은 관계에 대한 성찰이며, 관계 속 자신의 행위와 그 행위를 일으킨 감정, 생각에 대한 성찰이다. 이는 해결의 실마리이며 방향잡기라고 할 수 있다. 되짚어보기와 방향잡기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노력은 어두운 과거를 밝은 미래로 바꿀 수 있다. 불행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V. 가정폭력 남성가해자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첫째, 상담위탁 처분을 내리는 가정법원의 경우 상담위탁을 받을 상담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행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법원에서 상담위탁 처분을 내릴 때 부부를 함께 상담 받도록 명령을 내리거나 최소한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일선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자 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태영 선생님 탄신 백주년 추모원고 24**

이태영 박사를 기리면서

김 옥 라

각당복지재단 이사장

내가 이태영 선생님을 처음 뵈은 것은 1937년 감리교 신학교에 교수로 취임하신 정일형 박사의 부인으로서였습니다. 나는 19세의 어린 나이에 감리교 신학교 예과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정일형 박사는 농촌사회학 박사인 관계인지 모든 기초학문의 개론을 주로 강의하셨습니다. 철학개론을 비롯하여 심리학, 논리학, 사회학 등의 개론 강의를 하시면서 우리 반 담임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일형 박사와 이태영 선생은 신혼 시기였고 서대문구 죽점동(현재 충정로)에 사시면서 첫딸 진숙이를 보셨습니다. 그날 정일형 박사님은 교실에 희희낙락한 얼굴로 들어오시더니 칠판에 진숙이라고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또 나면 선숙이 또 나면 미숙이라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씨가 되어 정 박사 내외는 딸 세 자매를 두셨습니다.

우리 반 짓곳은 남학생들의 제안으로 하루 저녁 우리 반 학생 20여 명이 정일형 교수의 신혼 가정을 습격하였습니

다. 물론 당황한 것은 사모님이신 이태영 선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처음 뵈은 이태영 선생은 참으로 미인이셨습니다. 정일형 박사도 미남이신데 부인도 미녀였습니다. 신혼 가정에 예고 없이 습격한 학생들에게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도 무엇을 대접받았는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녀이신 이태영 신부의 애교 있는 접대에 마음이 녹아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뒤에 나는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미국 군정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 그곳에 정일형 박사가 계셨습니다. 미국 육군 중령은 나를 인터뷰한 뒤에 Personnel Department에 번역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출근을 하고 보니 거기가 군정청 인사처였고, 정일형 박사는 인사처장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신탁통치 반대라는 대자보가 여기 저기 붙었고 시내가 소란하였습나다. 그때에 사모님이신 이태영 선생님이 인사처에 나타나서 정일형 처장보고 빨리 피난 가라고 재촉을 하였습니다.

** 본소에서는 2014년 6월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탄신 백주년 기념 추모문집 「사랑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다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 이태영」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 담긴 각계 인사들의 추모의 글을 연재한다.

끄덕도 안하고 앉아계신 정 박사에게 “당신 왜 내 충고 안 받으시느냐?”고 처장 책상을 주먹으로 한번 두드리고는 그 주먹이 처장님 턱 밑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태영 선생님이 보통 여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고 이태영 선생님은 서울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곧 여성법률 상담소를 차리셨고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기 저기서 대중강연을 하셨습니다. 이태영 박사는 나면서부터 웅변가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단상에 올라서시면 그분의 말씀이 대중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나는 이 박사의 말씀에 매료되어 강연회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박사님도 나를 남편의 옛 제자로 귀여워하셨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에 자주 부르셨고 뭔가 제게 일을 맡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내 일에 쫓기는 사람이어서 이태영 박사님의 손발이 되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얼마나 이태영 박사를 존경하고 사랑 하는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명동사건으로 변호사 자격과 시민권까지 박탈당하셨을 때 나는 세계감리교 동남아시아 회장으로 국제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이태영 박사를 기조연설자로 초빙하였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나더러 괜찮겠느냐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태영 박사 외에는 이 국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해줄 분이 안 계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감리교 여선교회세계회장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세계여성 회장은 직권상 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단 회원이 됩니다. 나는 세계감리교협의회가 주는 세계 평화상 수상 후보자로 이태영 박사를 천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는 최후의 심사 임원회 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장인 캐논 박사가 느닷없이 카터 전 대통령을 천거하였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상 후보자는 일 년 전에 천거되어 여러 번 심사를 거친 후에 최종 투표하는 임원회에 오게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의장이 평화주택을 건설하는 카터 전 대통령에게 평화

상을 주자고 나온 것입니다. 모든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의장이 카터 전 대통령의 공적을 길게 말하고 나서 저에게 최종 후보로 남은 이태영 후보에 대해서 말하라 하였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전력을 다해 이태영 박사의 공적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드어떻게 내가 그렇게 영어로 웅변을 하였는지 의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개표 결과 이태영 박사가 카터 대통령을 한 표 이겼습니다. 우리 이태영 박사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카터 씨를 한 표차로 이긴 것입니다. 1984년 11월에 캐논 의장이 평화상을 가지고 서울에 오셔서 정동감리교회에서 이태영 박사에게 평화상 메달을 목에 걸어 드렸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의 레이크 주벌러스카(Lake Junaluska)에 있는 세계감리교협의회에 가면 세계평화상 수상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태영 박사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뇌의 속성과 다름

김 병 후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지난번 강의에서는 부부가 갈등상황에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 순간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는 끊임없이 예측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충돌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예측을 다들 다르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예측을 하는 사람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이 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인간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잘하는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문제에서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주장한다면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적 능력일까요? 이성일까요? 실은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때는 일반적으로 감정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간주되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인간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감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불안하면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외로우면 친구를 만나고, 문화를 접하고 싶으면 극장에 갑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실제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감정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성, 지식, 도덕적 가치관 등은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 올해 본소의 무료공개강좌인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2월부터 12월까지 (8월 휴강) 10강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성과 지식은 행동을 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인간도 동물 이기에 다른 동물들처럼 감정에 의해 행동이 유발됩니다. 이 감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생성되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우리는 그 감정에 의해 행동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감정에 의해 행복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살아 갑니다.

아직 뇌 과학이 발달하기 전, 프로이트가 인간의 마음이 무의식과 의식, 이드(id)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다시 인지 과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감정이나 마음은 모두 우리의 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뇌는 이러한 감정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한 활동, 자손을 남기기 위한 활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뇌는 외부세상을 감각 세포들을 통해 뇌 안에 받아들입니다. 감각세포를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은 운동세포를 통해 근육을 움직여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 운동세포군과 감각세포 사이에 마음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행동의 대부분은 의식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동은 의식적 행위와 무의식적 행위로 나누어 집니다. 행동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뤄집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행동을 보십시오. 걷고 청소를 하고 운동을 할 때 의식은 아주 적은 시간만 이뤄집니다. 무의식적으로 걷고,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의식은 집중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났다가 그 일이 끝나면 소실됩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는 자신임을 인지하는 “자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자아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책임을 집니다. 새롭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 많은 판단을 하려면 이러한 “자아”가 점점 정교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가 효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감정

역시 세분화되어 정밀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왜 필요할까요? 행동을 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해서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똑같이 위험한 상황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기억의 형태로 저장되어, 현재의 정교한 행동을 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감정은 예전에 했던 특정한 행동을 기억하고 뇌에 자동으로 저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한 행동이 뇌에 저장되고 나면, 순간적으로 그 행동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 그 기억이 회상되어 자동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감정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그 감정에 의해 유발되는 행위들은 뇌에 저장된 반복적 행위들입니다. 어떤 감정에는 어떤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어 우리들의 하루 행동을 결정합니다. 숙련된 일꾼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일을 새로 배우는 경우는 의식을 통해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의식의 통제하의 행위를 합니다. 숙련이 되면 자동적으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여 인간이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사고로 감정을 관장하는 뇌에 손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교류하지 못하기에 사회 생활에 적응하기 못하는 많은 경우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뇌영역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전두엽이고 다른 하나는 변연계입니다. 전전두엽에 이상이 있으면 감정표현을 할 수 없거나, 상황에 맞는 행위를 하는데 지장을 줍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정서입니다. 어떤 옷을 살 것인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지 하는 선택들은 정서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서를 구성하는 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신체 상태는 우리의 육체적 건강 상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정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육체적인 건강 상태인 것입니다. 면역체계, 근육의 상태, 심혈관계의 기능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위의 신체 상태는 ‘통증과 쾌락’ 이고 그 위에 ‘욕구

와 충동'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신체 정서를 배경 정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정서가 일차적 정서입니다. 일차적 정서는 자아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출현합니다. 일차적 정서는 6가지인데, 기쁨, 슬픔, 놀람, 공포, 혐오, 분노입니다. 이 정서는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공통으로 존재합니다. 파충류 등 군집생활을 하지 않는 동물들은 이 단계까지의 정서를 갖고 삽니다. 하지만 포유류와 조류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세 번째 정서인 사회적 정서까지 보유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정서는 사회 생활을 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출현합니다. 나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출현하는 일차 정서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을 가져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정서가 없다면 사회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정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출현하지만 그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출현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은 자신 이외의 누군가와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니 관계를 맺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정서가 작동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감정을 세분화하여 보면 그 안에는 '정서'도 있고 '느낌'도 있습니다. 정서는,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감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면 그 개체는 심장이 뛰고 땀이 나고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는 몸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뇌는 이러한 반응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뇌하수체를 통해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정서는 보여지는 감정입니다.

유효한 자극이 오게 되면 이와 관련하여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유효한 자극을 받아 들여 정서를 촉발시키는 부위가 변연계이고, 뇌하수체는 정서를 신체적으로 나타내게 하는 부위입니다. 이러한 정서가 뇌의 특정한 부위에 그려져서 자아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 느낌인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먼저 화난 표정이 정서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MRI 촬영에서 분노를 관장하는 뇌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정서는 타인이 관찰할 수 있지만 느낌은 타인을 알 수 없이 자신만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낌은 통증을 느끼는 뇌의 대상피질에서도 많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알게 되면 마음으로 자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통증을 관장하는 대상피질이 실제로 활성화가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느끼는 순간 실제 뇌의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가 활성화 되어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인간은 감정을 느낄 때, 정서는 육체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다시 뇌에서 활성화되어 느낌으로 이를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몸 상태,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회적 정서가 모두 합쳐져 느낌의 형태로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어 그 순간의 감정이 되어 그 순간의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감정으로부터 진화되었습니다. 정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과거의 기억들을 뇌에 입력하여 후의 행동에 참조하기 위함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세상을 사는 지혜가 늘어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감정에는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에는 뇌의 물리적 구조, 뇌의 전기 화학적 체계 그리고 참조기억의 3가지로 이뤄집니다. 앞의 두 기억은 뇌의 구조에 의해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각 개체가 경험하는 것은 참조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참조기억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외형기억과 암묵적 기억입니다. 암묵적 기억은 언어가 매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획득됩니다. 정서는 주로 이 암묵적 기억에 의해 기억됩니다. 감정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뇌에 부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뇌에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인위적인 자극을 주었을 때, 특정한 감정을 느낀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정 정서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역으로 일부러 특정 정서를 짓는 표정을 하면 그 정서를 뇌에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억지로 웃으면 뇌는 실제로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느낌은 주관적으로 자기만 느끼기에 타인은 알기 어렵습니다. 정서만 있으면 되지 왜 느낌까지 필요할까요? 느낌을 느끼는 주체가 그 정서를 알고 그 정서를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물이 먹이를 놓치면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다시는 그 슬픔을 똑같이 당하지 말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슬픔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느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의 주관성은 부부사이에서도 문제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보통 부부는 오래 같이 살아와서 서로의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지 않아도 상대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갈등의 원인 중 대부분은 의외로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멀어지게 된 원인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여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간다고 하었는데 통화하던 중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화가 나고 아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하지만 남편은 충동을 피하기 위해 아내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에 대한 감정이 식어갑니다. 아내도 남편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을 느끼지만 마찬가지로 문제 삼지 않고 남편에 대해 냉랭한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결국 부부사이에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만일 남편이 말을 했다면, 그리고 아내가 그 상황에 대한 진실을 남편에게 알려 주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 친구들과의 만남에 동창 남자들이 합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지 않지만, 감정은 남편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아내를 멀리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아내도 자신을 멀리하는 남편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남편에게 표현하지 않아 문제가 해결할 여지를 없애 버립니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여 문제를 들어내고 부부가 해결하려고 하면 쉽게 풀릴 문제들이 표현하지 않아 부부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느낌은 모른 채 상대가 표정으로 나타내는 정서를 자신의 관점에서 읽어 자신에게 이유 없이 불만을 가지는 배우자로 단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타나는 정서는 느낌처럼 정확

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것과 표정이나 태도로 나오는 정서는 명확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말 할 수 없이 큼니다.

우리는 상대의 느낌을 물어보아 정확한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고, 보여지는 정서로 상대의 감정을 멋대로 추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상대의 진정한 마음을 알면 쉽게 풀릴 문제를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사소한 이유로 오랫동안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이든 배우자의 감정이든 잘 알려고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든 배우자의 마음이든 잘 모르면서 충돌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외형적인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가 되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난과 지적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으로 갈등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 일 시 : 2016년 4월 9일 ~ 10일
- 장 소 :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
- 참가자 :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탁자 부부 20쌍과
자녀 10명을 포함 모두 50명
- 강 사 : 이서원(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사회복지학 박사)
김정희 · 정지혜 · 한은선(미술심리치료전문가)
- 진 행 : 차연실 상담위원 외 3명

I. 프로그램

1. 개회식

차연실 상담위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개 및 본소 부부캠프의 취지를 전달하였다.

2. 첫째 날 저녁강의

(1) OPENING

이서원 소장은 부부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특강을 시작하였다. 첫째, 부부가 서로에게 원하는 부분이 다른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내는 남편이 본인을 감싸주길 원하고, 남편 본인이 치켜 세워지길 원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를 감싸주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을 치켜세워주지 않을 것이고, 남편은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참석을 통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이서원 소장은 부부간 대화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한국 부부의 경우 대화 시간이 너무 짧고, 대화를 하더라도 마땅한 대화거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큰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부부가 함께 집안일을 하며 답소를 나누는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함께 설거지를 하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는 것인데, 설거지에 집중하면 부부가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좀 더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터놓기 쉬워진다고 조언하였다.



다양한 질문이 적힌 카드를 나눠주고 부부간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카드놀이를 통해 부부간 대화 시간을 가졌다.

(2) 봄 마음 마음 마중 파스한 부부여행

- ‘아, 당신을 안다고 생각했어.’

첫 마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화법이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투로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되면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어 기분 나쁜 대답이 나오게 하는 악순환이 된다. 한편 대부분의 부부는 상대방이 부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나’는 100% 피해자이고 ‘너’는 100% 가해자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1) 당신에게 원한 건, 나에게 원한 건

이서원 소장은 참석자들에게 ‘당신에게 원한 건, 나에게 원한 건’이라는 제목의 대화를 제안하였다. 이런 대화를 부부간에 나누게 되면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상대방 탓으로 돌리면서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리를 이동해 남편끼리, 아내끼리 모둠을 이루어 서로 작성한 것을 이야기해보도록 했다.

2) 왜 이렇게 된 거 같아?

이어서 참석자들은 “내가 당신에게 해야 했는데 해주지 않은 일, 내가 당신에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일”을 작성하고, 모둠에서 서로 작성한 것을 이야기해 보았다. 참석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을 찾고,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 1.

아내는 본인의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하며, 남편이 밖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잘하면 좋겠

다고 하였다.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힘들다고 하였다. 남편은 말 수도 적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며, 아내가 말을 걸면 기분 나쁘게 응대해 대화가 결국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반면 남편은 삶의 목표도 없고 아내에게만 의지하며 사는 점이 불만이라고 했다. 남편의 소극적인 삶의 태도는 가정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남편은 가깝게 지내는 지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약이나 음식을 보내며 정성을 쏟지만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만 할 뿐 지인을 챙기는 만큼의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남편은 평생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거친 아버지와 살면서 늘 위축되어 있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기 때문에 ‘내 배우자는 어머니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또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바란 것은 따뜻한 태도였는데, 아내는 목소리가 크고 말을 거칠게 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래서 가정 외부의 생활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내와의 대화가 더욱 줄어들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화를 시작하면 모든 문제를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아내에게 있다며 지인들과의 관계를 깊이 형성해왔던 것도 아내에게서 얻지 못한 따뜻함을 밖에서 찾은 결과라고 했다. 그렇지만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회복해서 성공적인 가정의 모델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부부의 이야기를 경청한 이서원 소장은 참석자들에게 묻이 열려서 도둑이 들면 누구의 잘못인지 물었고, 참석자들은 대부분 50대 50씩 잘못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서원 소장은 이 경우 도둑이 잘못이라며, 집주인의 잘못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49%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부부갈등도 마찬가지로여서 상대방의 잘못이 크더라도 본인의 탓 또한 1%라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내에게 왜 남편

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는지 묻자, 남편은 본인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들었고 아내는 상대방의 무관심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남편도 어느 정도 인정하며 본인도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시인했다. 이서원 소장은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말하면 남편은 가정 밖으로 도망치게 된다. 먼저 남편을 다독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이어서 대부분의 부부는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에게 잘해야만 나도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여서 부부 중 한 사람만 부드러워지면 갈등은 끝날 수 있다며 먼저 자신의 태도를 부드럽게 바꾸는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첫날 강의를 마쳤다.

3. 둘째 날 오전강의

(1) 봄 마음 마음 마중 파스한 부부여행

- ‘하, 이게 진짜 당신이구나.’

1) 생활 습관의 차이

다섯 시간 자는 나, 여덟 시간 자는 배우자. 나는 배우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 물으며 둘째 날 강의를 시작하였다. 배우자는 게으른 사람일까? 아니다. 나는 다섯 시간을 자면 피로가 풀리는 사람이고, 배우자는 여덟 시간을 자야 피로가 풀리는 사람이다.

앙드레 모로아라는 프랑스 소설가는 “부부란 두 사람 중 낮은 쪽의 수준에 따라 생활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아무리 아내가 고상하고 품격이 높아도 그런 아내의 수준을 남편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수준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경우라면 높은 수준의 배우자를 목숨 걸고 구해야 한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경우라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어야 한다. 작은 과제라도 내주고 해 내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서원 소장은 배우자에게 상장을 만들어 수여하자고 제안하였다.

2) 내가 움직이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두 가지는 상대와 과거이며, 바꿀 수 있는 두 가지는 나와 현재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얼른 나에게 돌아와 나의 어떤 점이 마음에 걸리는가, 이걸 왜 걸렸는가를 생각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내 탓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 탓이 조금이라도 더 크지만 아주 작게라도 내 탓 또한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이다.

3) 변화 가져오기

이서원 소장은 배우자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말고 먼저 따뜻하게 대하라고 조언하였다.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들게끔 따뜻하게 대하면 상대방은 그 마음이 고맙고 미안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고 바꾸게 된다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4. 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

이번 부부캠프에서도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 영·유아 프로그램

▶ 강사 : 정지혜(미술심리치료전문가)

정지혜 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보육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안녕! 반가워’ 활동을 통해 자기를 소개하고 친밀감을 형성한 후 ‘마음 그릇’ 활동을 통해 감정의 이완과 발산을 경험함으로써 창의적인 자기표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왔고, ‘버블버블’ 활동을 통해 놀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율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알록달

록 내 마음' 활동을 통해 매체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여 신체 감각을 촉진하였고, '내 마음의 액자'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통한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촉진시켰으며, '참 잘했어요!'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기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 참석한 영·유아들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미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였고, 미술작업과 신체놀이의 요소가 함께 구성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 아동 저학년 프로그램

▶ 강사 : 김정희(미술심리치료전문가)

김정희 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창의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내면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 저학년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집단원간 라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토작업' 활동에서는 긴장을 이완하고 감정의 해소를 경험할 수 있었고, '신체놀이' 활동을 통해 신체 에너지를 발산하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분위기에서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둘째 날에는 '가면 만들기' 활동을 통해 내면의 정서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도왔고, '가족에게 주고 싶은 선물 만들기' 활동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역동을 파악하고 가족의 긍정적 자원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아이들 스스로 적절한 이완과 해소를 경험하였고, 자기 작업에 몰두하면서 신체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3) 아동 고학년 및 청소년 프로그램

▶ 강사 : 한은선(미술심리치료전문가)

한은선 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아동 고학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서로 알아보기'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환영받는 분위기 조성으로 집단 내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미술 표현에 대한 흥미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토로 감정 표현하기' 활동에서는 점토 매체를 탐색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이완과 해소를 경험할 수 있었고, '나의 생일 케이크' 활동에서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벤트를 떠올려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하도록 도왔다. 둘째 날 '소망 담은 내 모습' 활동에서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도록 도왔고, 협동작업인 '나도 조각가' 활동을 통해 집단응집력을 증진하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 있는 경험으로 인식하도록 도왔다. 또한 '전시회' 활동을 통해 집단 내에서 지지와 격려를 교환하고 미술 활동의 경험을 통합하도록 도왔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전문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보다는 참석한 아동 및 청소년들 스스로 계획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개별 뿐 아니라 집단 전체가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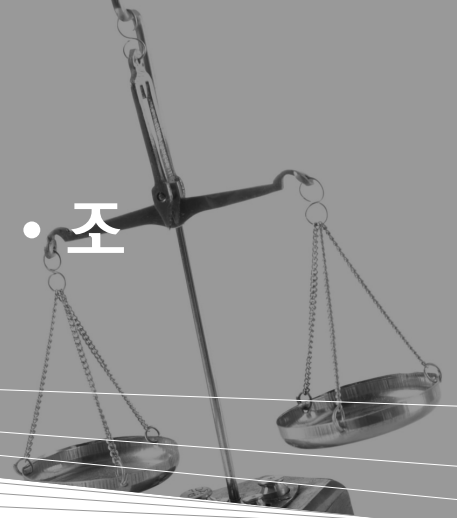
II. 정리

이번 캠프에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종이에 직접 쓰고 이를 바꾸어 보며 다른 부부들의 고민도 함께 공유하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참석자들은 서로의 상처를 읽는 방법을 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움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 참석한 부부들이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찾기를 기대해본다.

차연실 상담위원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폭행과 폭언, 주벽, 의치증 등으로
아내와 자녀를 괴롭힌 남편에 대해 이혼 등 결정**

법률구조 2015-363

담당 : 강중협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4세)와 피고(남, 48세)는 2001. 11. 6.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남, 14세), 사건본인 2(여, 12세)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10년 이상을 주3회 이상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후에는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심하게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였으며, 심각한 의치증으로 원고의 불륜을 의심하며 추궁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폭언을 피해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1년 3개월간 피고와 별거하다가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5. 12. 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2021. 2. 7.까지는 월 80만 원(사건본인 1인당 40만 원)의, 그 다음날부터 2023. 8. 24.까지는 월 40만 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출하여 8년째 소식을 끊은 아내에 대해
이혼 결정**

법률구조 2015-394

담당 : 김지원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7세)와 피고(여, 56세)는 1986. 12. 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성인자녀와 사건본인(남, 18세)을 두었다. 피고는 원고와 함께 **시장 내 소재하는 음식점을 운영했었지만 원고가 2003. 9.경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대부분의 운영은 피고가 해왔다. 그러다 가끔씩 원고가 음식점에 방문할 때면 피고는 남자손님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고, 2009. 6.경부터 피고는 회식을 한다는 이유로 잦은 외박을 하였다. 이후 2009. 8. 6. 피고는 갑자기 가출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행방도 모른 채 아픈 몸으로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5. 12. 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숙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것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를 통해 바로 잡음**

법률구조 2015-397

담당 : 송미란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86세)는 배우자 망 한**와 혼인한 후 1958년 5월 피고(남, 59세)를 출산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출생 당시 망 한**의 형과 그 부인 망 조** 사이에 아이가 없었고, 원고와 망 한**는 시부모님의 권유로 피고를 망 한**의 형과 망 조** 사이에 출생한 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친모라는 사실을 알았고, 원고를 어머니로서 모시고 살아왔다. 원고는 86세의 노령으로 친자인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의 모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등본 상에 피고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나타나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원고는 지금이라도 모자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 3. 9.)

1. 피고와 소외 망 조**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장래 양육비와 연체할 경우 1000만원 위약벌 결정

법률구조 2015-412

담당 : 문지영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36세)과 상대방(남, 36세)은 2004. 6. 11.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2세)을 두었으나 2008. 5. 14.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 상대방의 형편도 생각하여,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 금 300,000원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을 상대방과 협의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매번 힘들다는 핑계로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며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재혼한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고는 있지만, 사건본인의 양육을 도와주시는 부모님께 생활비 겸 양육비로 매월 1,000,000원씩을 드리고 있어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부산가정법원 2016. 1. 27.)

1. 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1. 1.부터 2027. 12. 31. 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나. 만일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여 그 연체액 합계가 100만 원을 넘는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 받는 즉시 연체액 및 향후 양육비 지급과 별도로 1,000만 원을 위약벌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앞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일체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혼 이후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과거 양육비 2천만원 등 판결



법률구조 2015-421

담당 : 양임석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47세)과 상대방(남, 46세)은 1995. 7.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성인 자녀 1명과 사건본인(여, 18세)을 두었으나, 2007. 7.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이후 제과점에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며 사건본인을 힘들게 양육하여 왔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생활은 계속 어려워졌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2. 22.)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권**과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6. 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 날이 속한 달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아~살려줘죽어!

저는 남편의 도박 및 가정폭력으로 1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도 모두 팔아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남편은 돈을 내놓으라며 저를 폭행하기도 하였지만, 다행히 살고 있던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추후 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에 저는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살게 되었고, 남편은 집을 나가 따로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저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의 주소지는 모두 서울로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Q

A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 참조).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객관적 병합은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각 청구 사이의 관련성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참조). 이에 비하여 가사소송법의 위 규정은 ①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때라는 관련성을 요구하며, ② 수개의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 상호간의 물론, 동종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도 병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분

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수개의 가사사건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심리를 집중시킴으로써 분쟁을 일거에 전면적으로 해결하여 재판의 모순·저축을 방지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병합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각 청구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① 하나의 혼인·이혼·인지·입양을 둘러싼 각 무효청구와 취소청구, ② 혼인·이혼·입양·파양의 무효·취소, 재판상 이혼, 재판상 파양의 각 청구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원상회복청구, ③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청구와 그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은 처음부터 각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뿐만 아니라 청구의 추가적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가사비송사건에 가사소송사건을 병합할 수는 없으므로,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청구사건 계속중에 피고가 가사소송사건인 위자료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사비송사건(재산분할청구)과 가사소송사건(위자료청구)의 관할법원이 같다면, 피고가 일단 위자료청구의 소를 별소로 제기한 다음, 위자료청구사건이 계속중인 재판부에는 사건을 재산분할청구사건이 계속중인 재판부로 옮겨달라는 취지의 이부신청을 하고, 재산분할청구사건이 계속중인 재판부에는 위자료청구사건과 함께 심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변론병합신청을 하여 하나의 절차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가 서로 다른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나들이’에 다녀와서

본소에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간 본소와 용인 에버랜드에서 비혼모 가정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였다.
캠프 참석자들의 소감을 싣는다.

김**

2013년 7월 21주, 민*이를 임신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울한 말만 가득했을 때 애란원에 입소해서 민*이를 낳는 순간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입양을 목적으로 입소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와 함께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2013년 12월 28일 어여쁜 민*이를 낳았고 산후우울증에 아이에게 소리도 지르고 많이 울기도 했고 애란원 퇴소 후 애란모자의 집에 입소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제는 애란원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기이지요. 이런 시기에 가.법.캠프에 오게 된 것이 제게는 참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에버랜드에 처음 온 민*이도 민*이와 함께한 것도 너무나 즐겁고, 제겐 제2의 시작이나 다름없는 애란원 가족들과 함께 해 더욱 좋았어요. 오늘 추억을 정말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제게 이런 사랑 나눠주신 분들,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한 번 더 다짐했어요.

신** (함** 엄마)

오랜만에 또 참석하게 되어 참 좋았다. 솔직히 처음엔 진짜 덩고 힘들었는데 아이와 함께 사파리도 하고 놀이기구도 탔다. **가 태어나서 나와 함께 놀이기구를 탈 줄 몰랐다. 그런데 그 어린 아가가 쑥쑥 커서 같이 놀이기구도 재미있게 타고 나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물론 **에게도 기억에 남는 추억이길! 그리고 곧 퇴소를 앞둔 시점이어서 이번 가법캠프가 마지막 캠프이다. 꽤 멀리 가서,

마지막인 만큼 **와 함께 멋진 추억, 예쁜 추억 만들어서 좋았다. 그리고 에버랜드에 가기 전 법률치료와 웃음치료를 들었는데 솔직히 몇 번 들어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잊고 있다가 기억난 것도 있지만 모두 좋았다. 그리고 노재광 강사님 너무 재미있었다. 매번 들을 때마다 박장대소를 하는 것 같다.

가법캠프에 참여하게 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오늘 내일이 우리 **에게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만족!!!

송**

에버랜드에 간다는 소식을 2월 쯤에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3월이 되었다. 처음 가보는 에버랜드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들떠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다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였다. 하지만 나는 어젯밤부터 체기가 올라오더니 오늘 아침에도 위액을 토하고 와서인지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강의를 얼마 듣지 못하고 화장실에 있다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간호사 선생님께 갔다. 오늘 오신 간호 선생님은 마포 애란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처음 뵈었는데 너무 친절하고 좋은 분 같았다. 덕분에 하루 종일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손을 따고 약을 먹고 난 뒤 웃음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강사님은 항상 “얘기 안 들으셔도 됩니다. 웃어주시기만 해도 되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강의내용은 ‘경청’과 ‘대인관계능력’ 인데, 나는 원래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강사님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로 나도 모르게 듣는 습관을 기르고 있

었다. 그랬더니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나를 보는 눈빛이나 태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원하지,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에버랜드에 가서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소풍을 총괄하시는 장현주 원장선생님께서도 자신의 이야기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주었으면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단체 행동보다 원하는 곳에서 사진도 찍으며 자유로이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원장선생님과 대화가 통해서 마음이 편찮아졌고, 신나게 놀 수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날 이사를 가게 되어 가지 못했던 에버랜드를 오게 되어 정말 보람 있었고 더구나 사진 찍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나이에 더욱 즐거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즐겁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의 수고로 하루를 잘 마칠 수 있어 감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정**

가정법률상담소에 가서 강의를 들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도착을 하여 힘들고 피곤해서 참고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자꾸 잠이 쏟아지고 몸이 힘들어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조금 들은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많았다. 점심을 먹고 쉬고 2시간 가량의 강의시간이 또 있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소통을 하는 방법 중에 말을 하는 사람과 경청을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 경청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책을 읽는 습관이라고 하였다. 어떤 엄마가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책을 읽기만 한다고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는데 그냥 두라고 하였다. 아이가 이해력이 높아져서 나중에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고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아이의 입양을 확정 지었지만, 태어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책 읽는 습관을 가져 보려고 한다.

강의가 끝나고 에버랜드에 도착해서 사파리 월드를 갔는데 오랜만에 동물을 가까이에서 봐서 기분이 좋았고 오랜만에 바깥공기를 마셔서 좋았다.

고맙습니다

2016년 4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희, 심무순, 유문숙, 이병주,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경수현, 곽성환, 김지후, 김태주, 박수열, 박은정, 유정아, 이혜만, 장경아, 정수경, 한임정, 형장우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미옥, 김진아, 방선영, 이승주, 장주용,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원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임채룡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차혜진, 이정현, 정주은, 이현지, 최경수, 김수현, 한승빈, 전다운, 이예린, 황정민, 김유진, 박정현, 이경철, 심우봉, 허난영 님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봉사

정근정 님

• 상담 자원봉사

최지연 변호사 님

후 원

• 평생회원이 되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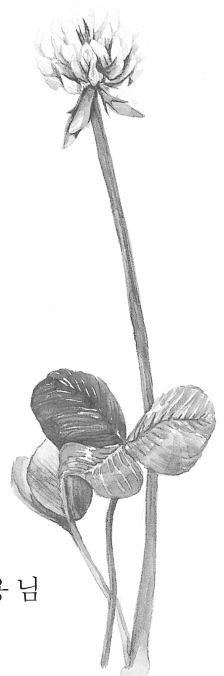
김성룡, 황현정, 박소연 님

• 일반회원이 되신 분

임완수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김태강, 천정환, 장주용 님



상담소 소식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 법교육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본소에서는 4월 6일 여의도 벚꽃축제를 맞이하여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여의도 벚꽃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행사는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법률상식 퀴즈, 법개정활동 홍보 및 서명 활동, 상담소의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였다. 시민들은 간단한 법 상식 퀴즈를 풀면서 그 동안 잘 몰랐던 법률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다고 적극 참여 하였으며, 상담소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본 행사에는 상담소 직원 13명과 자원봉사자 5명, 그리고 6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관련사진 2면)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전동차 내부에 상담소 홍보물 게시 서울 시내 전광판에 영상 홍보물 게시 예정

본소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2015년 2기 '서울시민 희망 광고 소재 공모'에 당선되어 2016년 3월 말부터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모서리, 신촌역 승강장 안전문, 강남역 6번 출구 앞과 동교동 제일은행 앞의 가판대에 상담소 홍보물이

부착되었으며 6월말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또한 추후 서울 시 보유 시내 전광판에 상담소 영상 홍보물이 6월과 7월 중에 게시될 예정이다.(관련사진 2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 본소 방문

4월 7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과 한혜림 정책개발팀장, 손은정 직원 등이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본소를 방문하여 곽배희 소장과 면담하였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친부모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탁아동의 위탁부모와 관련 위탁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지원을 요청하였고 본 소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지원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이 배석하였다.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4월 28일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관계의 뇌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65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는 생물학적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임 공익법무관 부임

4월 1일부터 오종근(로스쿨 3기)·권혁채 (로스쿨 4기) 공익법무관이 새로 부임하였다. 공익법무관들은 앞으로 일 년 동안 상담소에서 법률구조 활동을 위해 근무하게 된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직장체험 연수 - 강진희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황현정, 박소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서지연 변호사
오동준, 권혁채 공익법무관

출장 법교육 및 상담

- 4.1 학교폭력예방교육-삼가초
정연이 상담위원
- 4.1. 학교폭력예방교육-운중초
김민선 상담위원
- 4.5 학교폭력예방교육-건원초
차연실 상담위원
- 4.6 학교폭력예방교육-제일초
정연이 상담위원
- 4.6.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법교육-여의도
조은경 외 상담위원
- 4.11. 학교폭력예방교육-장기초
차연실 상담위원

- 4.21 학교폭력예방교육-행신초

차연실 상담위원

- 4.26. 서울대사회복지학과 학생 대상 특강

박소현 상담위원

- 4.27. 온누리호스피스 대상 가족법 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4.27. 법률구조체험교육-신남중

조은경 상담위원

상담소 기관 방문

4월 19일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이명숙 님 외 1인

LH 한국주택공사 서울지역 본부 강서권주거복지센터 양지수 차장 외 1인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4월 4일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 수탁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11일에는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다. 26일에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특강하였으며, 27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다.

광배희 소장, 법의 날 기념식 참석 등

본소 광배희 소장은 4월 7일 본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내로 본소를 방문한 중앙가족위탁지원센터 임원진과 위탁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위탁부모에 대한 친권 부여 문제의 법제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9일에는 본 상담소의 후원을 위해 해외지부로 설립되었던 워싱턴 가정상담소 정인숙 이사장이 내소하여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설립 40주년 및 상담소 전반과 관련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25일에는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지부소식

강릉지부

4월 4일, 11일, 25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조영삼, 홍영표 변호사가 3건의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거제지부

4월 5일, 12일, 20일, 25일 법원행위자상담, 법원심화상담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진성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구리지부

4월 5일, 11일, 15일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5일, 12일, 15일 구리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와 주민센터에 가정상담지, 리플렛 등으로 홍보하였다. 이경숙,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 출장상담,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4월 15일 상담원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23일 대구가

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를 실시하였다. 4월 29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부부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박태영, 윤용원, 김영심, 이재동, 임경, 신성욱, 광경화, 정홍록, 구인호, 정건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총 11회, 가사재판 상담 총 3회를 실시하였다. 4월 1일~26일 성남지역 초등학교 4학년대상으로 폭력예방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총 8개교 32개 학급). 성남시정보문화센터, 성남중앙도서관 등에 가정상담지, 상담소 리플렛으로 총 17회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김정혜, 송지민, 공영서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정수경, 최유나, 한승일, 공영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 협의이혼상담, 이혼 전 부부 심층상담을 실시하였다. 강은혜, 김남훈, 김한준, 김현명, 박지훈(성남), 소운수, 손난주, 양승철, 오도환, 이국희, 이정호, 한두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제주지부

제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전 상담을 총 11회, 총 25건 실시하였다. 4월 15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강문원, 김홍면, 한대삼, 현창곤, 황인철, 박현민, 김수진, 최호웅, 조준범, 김세희, 백신옥, 강문숙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4월 7일~4월 28일 종사자 교육으로 “카네기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주 1회, 총 4회기). 26일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상담을 실시하였다. 정수경, 김창건, 최유나, 이동진, 이재경, 장경아, 이수희, 이영주, 황은하, 여지은, 홍지혜, 장인영, 고승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4월 6일 창원지방법검찰청 형사조정과 19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20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7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기관 협약식을 실시하였다. 남상업, 오유경, 민태식, 강재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춘천지부

허남정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2016년 3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6년 3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3,639건으로 본부가 7,178건, 지부가 6,461건이었다.

본부는 6,508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364건·소장 등 서류작성 246건·소송구조 60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482건·화해조정 849건·소장 등 서류작성 59건·소송구조 71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50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6년 2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1.5%→1.7%), 이혼(22.1%→24.9%), 위자료·재산분할(10.2%→11.8%), 친권·양육권(4.9%→6.9%), 양육비(6.8%→7.0%), 유언·상속(4.5%→5.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파산(3.3%→4.3%),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3%→0.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50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318건(20.3%), 전화상담 4,977건(76.5%), 통신 및 인터넷상담 212건(3.2%),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6년 4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6,310			
법률상담 (5,755)			
면접	전화	통신	지상
1,277	4,249	228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47	164	44	

* 2016/4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121,514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7,178	1,318	4,977	212		지상 1	6,508	364	246	60
강릉 (033) 652-9555	162	134	19				153	7	1	1
거제 (055) 633-7636	114	96	18				114			
광주 (062) 672-6011	85	30	55				85			
구리·남양주 (031) 551-9976	310	156	57				213	92	1	4
군산 (063) 442-1560	98	39	54				93	4	1	
대구 (053) 745-4501	512	230	28	4		출장 158	420	89		3
대전 (042) 520-5258	267	50	214				264		3	
제주 (064) 753-9421	447	136	131			출장 2	269	171	3	4
동해 (033) 535-0188	100	39	59			출장 2	100			
목포 (061) 273-2514	82	3	76	2			81	1		
부천 (032) 667-2314	324	83	164				247	75	1	1
성남 (031) 707-6661	364	167	98	5			270	85	3	6
수원 (031) 243-4600	556	141	281	1		출장 58	481	67	2	6
순천 (061) 753-9910	175	81	81				162	10		3
충구 (02) 2238-6554	230	158	70				228			2
안동 (054) 856-4200	110	13	43			출장 2	58	49	1	2
울산 (052) 246-9568	110	15	89				104		5	1
익산 (063) 851-5113	340	112	216			출장 9	337			3
인천 (032) 865-1120	325	154	139				293	11	5	16
전주 (063) 244-2930	397	199	95	89	4		387	3	3	4
정읍 (063) 535-3705	103	22	62				84	18		1
진주 (055) 746-7975	143	32	62				94	42		7
청원·마산 (055) 261-0280	332	203	78	6			287	42		3
청주 (043) 257-0088	219	74	72	2			148	62	9	
춘천 (033) 257-4688	123	29	37			출장 54	120	3		
태백 (033) 554-4004	72	14	31			출장 27	72			
평택·안성 (031) 611-4251	194	75	85				160	12	21	1
제천 (043) 644-5690	86	34	51				85			1
포항 (054) 283-7555	81	12	61				73	6		2
지부총상담	6,461	2,531	2,526	109	4	출장 312	5,482	849	59	71
총 상담	13,639	3,849	7,503	321	4	출장 312 지상 1	11,990	1,213	305	131

**2016/3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143,892건

삶의 격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



페터 비에리 지음
문향심 옮김
은행나무, 2015

‘격’ - ‘바로 잡다’는 뜻이다. 바름, 나뭇가지를 뜻하기도 한다. 페터 비에리의 「삶의 격」을 읽었다. 부제는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이니 삶의 격이란 곧 존엄한 삶이란 뜻이겠다.

인간은 존엄하다고 하지만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살고 있지는 않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새로운 계급론이 등장하고, 사회 곳곳에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인간의 존엄’이란 절대적인 명제인 동시에 절대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가치이기도 한 것이다.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파스칼 메르시어라는 필명으로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발표한 소설가이기도 한 페터 비에리는 이 책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관찰자와 문제 제기자의 관점에서 일상생활과 문학, 영화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존엄성이란 어떤 절대적인 속성이 아니라 삶의 방식, 즉 삶의 격이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인간은 자립성, 진실성,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예를 들어 세계난쟁이멀리던지기대회가 있다고 한다. 저자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자 프랑스 법원과 유엔은 판결을 통해 이를 금지시켰다.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지만 던져지는 대상인 난쟁이가 가운데 마누엘 바케나임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난쟁이는 유엔 법정까지 찾아가서 서커스에서 던지기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달라고 싸웠다. 그는 존엄성을 지키는데 필요한 생존을 위해 일할 곳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존엄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행위 뿐 아니라 상황도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존엄성에 관해 저자는 독립성으로서의 존엄성, 만남으로서의 존엄성, 사적 은밀함을 존중하는 존엄성, 진정성으로서의 존엄성, 자아 존중으로서의 존엄성, 도덕적 진실성으로서의 존엄성, 사물의 경중을 인식하는 존엄성,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존엄성 등으로 나누어 충분한 사례를 통해 다각도로 설명하고 있다.

서문에서 필자는 이 책을 읽고 누군가 다음과 같이 말해 준다면 목표를 이루었다고 안도할 수 있을 것이라 했는데, 독자로서 그에게 안도해도 좋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천천히 두고두고 여러 번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아주 새로운 것은 없었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많아.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말로 정리해 주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사고의 주변에 머무를 뿐 명확하고 뚜렷하게 규정지을 수 없는 것들도 실제로는 아주 많다는 것을 저자가 숨기지 않았다는 점도 좋다.”

이 숙 현 편집부장

2016년
5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관련 비디오 시청
- ▶ 일정 : 매주 금요일 오후 2:00 ~ 3:30
- 2단계 : 집단 심리상담
(대상 : 본소 법률상담 내담자, 사전 예약 필수)
- ▶ 일정 :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5/9 휴강)
- ▶ 강사 : 김명준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
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2016년 1월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4시(8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5월 26일(목)	분노의 의미와 기능
6월 23일(목)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
7월 28일(목)	전이감정과 부모세대와의 갈등
9월 22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0월 27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1월 24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12월 22일(목)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 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가족의 현실과 미래-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일시 2016년 6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 좌장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발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통계에 나타난
한국가정의 변천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정현숙(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과 남성의식 변화

- 정유성(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 한국가족, 다양해지고 있는가

- 김혜영(숙명여대 산업정책대학원교수)

*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비전

- 손애리(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실장)

* 외국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 조영훈 (동의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법의 역할 및 과제

- 김상용(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